#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61

발의연월일: 2021. 6. 17.

발 의 자:문진석・김윤덕・서영석

송갑석 · 윤재갑 · 이동주

이용빈 · 이정문 · 이형석

조오섭 · 주철현 · 홍익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는 저비용·고효율의 교통수단으로서 철도를 대체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제주·전주·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BRT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변경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또한, BRT 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5년), 대중교통기본계획(5년) 등 관련 교통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안 제4조),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분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더불어 광역이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시·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하고(안 제5조, 제32조),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36조 등).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도시권"을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도시권"을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전단 중 "직접"을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해 직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해 시·도 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 인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시·도가 부담하는"을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조제5항 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하고,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간선급행 버스체계운송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간선 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 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1.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 영

- 2.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간선급행버 스체계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7조) 중 "제36조제1항"을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종전의 제41조) 본문 중 "제39조 또는 제40조"를 "제40조 또는 제41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대도시권</u> 의	제1조(목적) <u>도시교통정비</u>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지역 및 교통권역</u>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	
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u>대도</u>	1 <u>도시</u>
<u>시권</u> 에서 건설·운영하는 「대	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	
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	
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	
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	
계를 말한다.	
2. "대도시권"이란 「대도시권	2.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	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
시권을 말한다.	<u>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u>

#### 3. ~ 6. (생략)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 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 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10년 단 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 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 통부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 행 등으로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효율적인 교 통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직권으로 또는 시 ·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생략)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 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u>다.</u>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총	종합계		
획의 수립 등) ①			
<u>5년</u>			
② ~ ④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⑤ 국토교통부장관			
<u> </u>			
<u>⑥</u> (현행 제7항과 같음)			
ગોદગ(ગોગોગગોપોગગોગો ગ	게[ㄱ/기 1] 그 테 비 k 레 게 드 게 HL 게		

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

유)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u>직접</u>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 <u><신 설></u>

#### ⑦ (생략)

제16조(비용부담)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체계시설을 관할하는 시·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체계시설을 우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시·도가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경우에는 해당 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의 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관할 시·도가 부

6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해 직접			
<u>.</u>			
⑦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			
<u>닌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해 시</u>			
•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이 승인하여 고시할 수 있다.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6조(비용부담) ①			
<u>시·도 및 시·군·구가</u>			
<u> 부담하는</u>			

담한다.

#### ②·③ (생 략)

-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토 저 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 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 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 계건설사업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5조제5</u> 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b>.</b>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제5조제5항부
<u>터 제7항까지</u>
<u>.</u>
②제5조제5
<u>항부터 제7항까지</u>
제36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간선
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자가 제3
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
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
분이 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

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 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 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 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 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사용할 수 없다.
- 1.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
  런,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
  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
  설의 건설 및 운영
- 2.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u>제36조</u>(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u>조</u> 등) (생 략)

제37조(청문) 실시계획승인권자 전 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 허를 취소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u>제38조</u>(권한의 위임) (생 략)

제39조(벌칙) (생략)

제40조(벌칙) (생 략)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간선
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
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u>에37조</u>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현행 제36조와 같음)
<u>세38조</u> (청문)
제37조제1항
<u>세39조</u> (권한의 위임) (현행 제38
조와 같음)
<u>세40조</u> (벌칙) (현행 제39조와 같
<u>세41조</u> (벌칙) (현행 제40조와 같
음)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u>제42조</u> (양벌규정)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	<u>제40</u> 조 또는 제41조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u>.</u>
<u>제42조</u> (과태료) (생 략)	<u>제43조</u> (과태료) (현행 제42조와
	같음)